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192호

2025년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계획 공고

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위상 제고를 위해 우수한 혁신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과 기업(기관)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해당하는 기업(기관) 또는 개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. 3. 5.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① 포상개요

- (산업기술진흥 유공)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산업기술진흥과 신기술 실용화 부문 유공자 포상
- (대한민국 기술대상) 기술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에 대한 정부 시상

② 포상규모

○ 2025년 정부포상(시상) 규모·훈격은 **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**

교사/시사) 보므		훈(상)격	2025년(案)		
포상(시상) 부문			正(0/기	개인	기업(기관)
			산업훈장	2점	-
	산업기술	기술개발 및	산업포장	3점	-
	진흥부문		대통령표창	4점	-
산업기술	(23점)	혁신성과	국무총리표창	4점	-
진흥유공		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10점	-
	 신기술 실용화	시유하미	산업훈장	1점	-
(총 72점)			산업포장	1점	-
		실 용 화 및 판로지원	대통령표창	3점	3점
	부문 (40전)	근도시전	국무총리표창	3점	4점
	(49점)		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	24점	10점
대한민국 기술대상			대통령상	-	2점
			국무총리상	-	4점
(총 16점)		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	-	10점	

③ **신청자격**

포상(시상) 부문				신청자격	
			첨단전략	■ 산업부 중점 투자 R&D분야 관련 신규 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* (기본자격)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(장관표창은 3년 이상),	
		기술 개발	주력제조	소속기업(기관)/관련 기관(학회.협회) 등의 추천을 받은 자 ** (첨단전략) 반도체/디스플레이/이차전지/첨단바이오 분야	
	산업기술 진흥		미래전환	(주력제조) 지능형로봇/미래모빌리티/항공·방산/핵심소재 분야 (미래전환) 첨단제조/차세대 원자력/에너지신산업 분야	
산업기술진흥	부문	혁신	기술확산	■ 개발이 종료된 기술혁신 효과 및 사업화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* (기본자격)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(장관표창은 3년 이상), 소속기업(기관)/관련 기관(학회.협회) 등의 추천을 받은 자	
유공 (정부포상, 개인 • 단체)	성과	사업화	** (기술확산) 매출액/비용절감, 국산화 및 수입대체, 생산성 향상 등 산업전반의 기술혁신 및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 (사업화)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기술로 매출·수출 신장 및 고용 확대 등 사업화 성과 도출에 크게 기여		
	신기술 실용화	실용화		■ 신기술제품인증'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, 사업화 및 실용화기여자(대표, 임직원 등) *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 ■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, 사업화 및 실용화 기여 기업	
	부문	판	로지원	■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,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(기업)·공로자, 우선구매 공공기관,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	
대한민국 기술대상 (정부시상, 단체)			■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, 제품을 개발한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 *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		

④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

- 평가기준
- 산업기술진흥 유공

포상(시상) 부문		평가기준		배점
			수공기간	20
			기술의 독창성	15
			기술의 난이도	10
	기술	개인(85)	파급효과	10
	개발		정부정책 부합	10
	/미크		산업 경쟁력 강화	10 10 10
			산업재산권	10
산업기술		기업(15)	R&D 투자	10
			기업의 사회적 책임	5
진흥유공			수공기간	10
부문			기술진흥 성과	15
. –			제도개선 노력	15
	취시	개인(90)	정부정책 부합	10 10 10 5 20 15 15 10 10 10
	혁신 성과		사회적 평가	10
			기술인프라 확산 지원	10
			환경보전 성과	5
			기술관련 성과	5
		기업(10)	산업(인프라, 제도) 경쟁력 향상	10

포상(시상) 부문		평가기준		배점
			수공기간	20
			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	15
			기술의 독창성	15
		개인	기술의 난이도	10
			신기술실용화 강화	20
			파급효과	10
	실용화		사회적 책임	10
	들은지		수공기간	20
			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	20
			기술의 독창성	15
		기업	신기술실용화 경쟁력 향상	15
			파급효과	15
			사회적 책임	10
			사회적 평가	5
			근속년수	20
11314			우선구매 금액규모	10
신기술			우선구매 품목수	10
실용화			구매실적 증가율	10
부문			신규품목 발굴실적	5
1 15		개인	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	5
			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	5
			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	5
			제도개선 노력	10
			정부권장정책 이해도	15 10 5 20 10 10 10 5 5 5 5
	판로지원		공공구매활성화 차별성 독창성	10
			우선구매 금액규모	20
			우선구매 품목수	10
			구매실적 증가율	
			신규품목 발굴실적	20 10 10 10 5 5 5 5 10 10 10 20 10 10 5 5
		기업	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	
			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	
			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	5
			제도개선 노력	20
			정부권장정책 이해도	10
			공공구매활성화 차별성 독창성	10

- 대한민국 기술대상

포상(시상) 부문	평 가 기 준				
		경쟁력	정부정책 부합	10	
			기술의 우수성	15	
			기술적 난이도	5	
	기술의 가치		기술의 독창성	10	
	기술의 기시	창의성	산업재산권	10	
			귂세 인증 및 수상실적	10	
대한민국		파급성	기술의 확장성	5	
기술대상			기술의 파급효과	5	
712710	기술개발 역량	R&D체계	R&D인력의 기술축적	5	
	기울개월 작당	RODAIIAI	R&D 투자	5	
		기반구축	생산시설, 인력, 자재	5	
	기술의 사업화	마케팅 역량	전략수립 및 인력확보	5	
	기울의 사업화	사업성	시장환경	5	
			시장점유율 및 매출액	5	

○ 선정절차

산업통상자원부, 국가기술표준원, 대한민국상훈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포상신청 신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접수 ______(~4월) ■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협·단체, 부처 협조 등 추천 신청방법 ■ 유공 및 기술대상 해당자와 기관(기업)이 자유롭게 신청/제출 산업기술 진흥유공 대한민국 기술대상 공개검증/ 공개검증/ • 포상신청자 공개검증(15일 이상) • 1차 요건확인 : 수공기간, 범죄, 산재, 요건확인 요건확인 좌동 불공정거래, 임금체불, 세금체납, 사회적 물의 등 (1차, 5월) (1차, 5월) Ţ **포상심의위원회 •**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심의 전문가 평가 심사/추천 • 포상신청자 요건·서면심사, 전문가 심사, 위원회 (5월) 심사 현장 확인 후 산업부 추천 (6~7월) 정부포상 현장검증 • 포상계획 수립 후 행안부 협의 규모협의 현장실사 (포상 예정일 90일전 완료) (6월) (~ 8.22) 선정 Д 심사 공개검증/ 포상심의 • 포상신청자 공개검증(15일 이상) (5~11월) 최종심의 위원회 요건확인 • 요건 2차 확인 : 수공기간, 범죄, 산재, (7월) 불공정거래, 임금체불, 세금체납, 사회적 물의 등 심사 (2차, 8월) • 산업부 공적심의위원회(위원장 1차관) 개최 공적심의 공개검증/ 위원회 • 산업부 장관표창 대상자 확정 요건확인 좌동 • 포상대상자 후보 행안부 제출 (최종)심의 (2차, 8월) (9월중) (포상 30일전, 상훈시스템 입력) 행안부 |**행안부 심의/확정| •** 행안부 심의·확정 대통령상 심의/확정 국무총리상 (훈·포장, 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) (~11월중) (~11월중) 산업기술진흥유공 부문 신기술실용화 부문 기술대상 부문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신기술실용화 시상식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시상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KEIT)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KATS) (12월) •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개막식(12월) •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대전 개막식(12.3일)

※ (1·2차 공개검증 방법) 15일 이상 소통24, 국민생각함, 대한민국 상훈 및 부처 홈페이지 동시 게재를 통한 검증

5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

○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5일(수) ~ 4월 4일(금) 18:00까지

- 신청서류 : 신청양식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작성

• 산업기술진흥 유공, 대한민국 기술대상 : 산업통상자원부(http://motie.go.kr)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(https://www.keit.re.kr) 홈페이지

• 신기술실용화 유공 : 국가기술표준원(www.kats.go.kr), 한국신제품인증협회(www.knep.or.kr)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(www.koita.or.kr),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(www.ripa.or.kr) 홈페이지

• 정부포상업무지침(2024.1.1. 시행): 대한민국 상훈(www.sanghun.go.kr) 홈페이지

제출 서류	서 식	수 량	비고
1. 신청서	별첨	- 인쇄물 1부 - 파일 1부	- 부문별 해당 신청서 - 파일은 USB 또는 이메일 제출 ※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(우편불가)
2. 동의서	별첨	1부	-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3. 추천서	별첨	1부	-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서(대한민국 기술대상은 미해당)
4. 수상이력서	별첨	1부	- 정부포상수상이력서(대한민국 기술대상은 미해당)
5. 공적조서	별첨	1부	- 공적내용을 기술한 공적조서
6. 기타 증빙자료	-	각 1부	- 사업자등록증 사본, 회계감사 보고서, 기타 증빙자료

[※]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신청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의 "산업기술진흥부문"과 "대한민국 기술대상"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(우편불가)

○ 접수방법 :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접수

	산업기술 진흥 부문	 KEIT(www.keit.re.kr) 및 SROME(srome.keit.re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(단,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) 제출처 : SROME(srome.keit.re.kr) > 산업기술진흥 유공 신청 또는 KEIT 홈페이지(keit.re.kr) > 공지・공시 > 공지사항 문의처 :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(☎ 053-718-8614, kimmy@keit.re.kr)
산업 기술 진흥 유공	신기술 실용화 부문	o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1) 접수방법은 이메일(온라인) 접수(필수)와 우편(4월 4일 소인분 유효) 또는 방문 접수 2) 우편 접수 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-mail(knep1@knep.or.kr)로도 송부 3) 문의처 - (사)한국신제품인증협회 사무국 : 신제품(NEP) 및 신기술(NET), 우수재활용제품(GR) 관련 유공자(기업), 판로지원 유공자(기관) (15847)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22, 한림엘타워 302호(☎ 031-452-6216~8) -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기탐 신제품(NEP) 및 신기술 (NET) 관련 유공자(기업) (06744)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, 산기협회관 시상인증단(☎ 02-3460-9022~5) - (사)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(RIPA): 우수재활용제품(GR) 관련 유공자(기업) (15588)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,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(☎ 02-3409-4370)
대한민국 기술대상		 KEIT(www.keit.re.kr) 및 SROME(srome.keit.re.kr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(단,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) 제출처 : SROME(srome.keit.re.kr) >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또는 KEIT 홈페이지(keit.re.kr) > 공지·공시 > 공지사항 문의처 :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성과조사분석실 (☎ 053-718-8288, kobj@keit.re.kr)

^{*}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

^{**}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⑥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

○ 포상기준

1)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

훈 장	포 장	대통령·국무총리표창	산업부장관표창
해당분야 15년 이상	해당분야 10년 이상	해당분야 5년 이상	해당분야 3년 이상

- * <예외> 추가수공기간 적용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
-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(단,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위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)

2) 재포상 금지기간 :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 - *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 될 수 있음 (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 등)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)
 - *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(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(장관표창은 2년)
 - 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**평가 우수기관**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※ 다만, 정부시상(대한민국 기술대상)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3) 정부포상 추천 시 기준일

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'포상 추천일'로 하되,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'퇴직일'로 함

○ 「상훈법」제5조 또는「정부표창규정」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

○ 추천제한

[일반국민 포상]

- 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2)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-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- ※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 - 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
 - ※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 - 최근 3년(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) 이내 1회 이상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10조 및 같은 법「시행규칙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 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- 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.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 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포함) 및 그 임원
 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 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 - 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7)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 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○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9) 기 타
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, "부적정", "한정"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- *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[단체표창]

-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 - *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「정부표창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- 최근 3년 이내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 - *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- ㅇ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단체
 - 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www.share.go.kr)의 e하나로민원 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** 단. 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)의 경우.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
-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
7 기타사항

- ○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'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'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
-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(공공) 홍보지원
- 방송·언론채널,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홍보채널 등을 통해 수상 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 동의(별도 비용부담 없음)
-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
- 공고기간, 평가진행 및 시상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-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,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
- 확정되지 않은 추천 훈격 등은 사전 공개가 제한됨
-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**행정안전부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및** 「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 준함
- 별첨 1. 산업기술진흥 부문(기술개발) 신청서 양식 1부.
 - 2. 산업기술진흥 부문(혁신성과) 신청서 양식 1부.
 - 3. 신기술실용화 부문(실용화(개인)) 신청서 양식 1부.
 - 4. 신기술실용화 부문(실용화(기업)) 신청서 양식 1부.
 - 5. 신기술실용화 부문(판로지원(개인 및 기업)) 신청서 양식 1부.
 - 6.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.
 - 7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산업기술진흥 유공) 1부.
 - 8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대한민국 기술대상) 1부.
 - 9. 산업기술 진흥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(공통) 1부.
 - 10. 산업기술진흥 유공(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)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.
 - 11. 정부포상 수상이력서 1부.
 - 12. 공적조서(산업기술 진흥유공) 1부.
 - 13. 공적조서(대한민국 기술대상) 1부.
 - 14. 산업기술분류표 1부.